

연금시장리뷰 7호

고령화 시대의 퇴직연금제도 정착방안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국대학교 :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043-840-3464, wonshik@kku.ac.kr)

□ 고령화 시대의 퇴직연금제도 정착방안¹

- 다양하고 유연한 퇴직연금제도가 필요하다

고령화시대에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기존의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정부의 복지비 부담을 줄이고, 본인이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기금으로 퇴직 기간에 생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세대간의 문제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더 노동시장에서 오래 머무르도록 노력하여 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퇴직연금기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게 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성격의 퇴직연금은 현재 다양한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다. 우선 퇴직연금으로의 활성화가 매우 미약하고, 퇴직연금이 초장기적 상품임에도 연금상품의 선택이 제약되어 있고, 연금 급여에 대한 보장 및 기금운용 및 제도에 대한 감독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퇴직연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부의 퇴직연금제도 개선방향에서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Cash Balance Plan 등의 도입이나,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안에서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을 규제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에 정책적으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기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퇴직연금 운용이 감독체계 부실로 인하여 가입자들의 급여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는 자본시장 및 노동시장에 전반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폭넓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년폐지 등을 통하여 근로기간을 늘리는 조치, 저축장려 정책의 재추진,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 규제완화 및 감독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1 본 보고서는 김원식, "고령화와 퇴직연금 정착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1세기근로복지연구회, 유일호 국회의원실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국회의원회관, 2009. 11. 4)에 기초하여 수정보완됨

1. 서론: 고령화와 퇴직연금

○ 고령화시대에서 우리는 수 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임

- 첫째, 정부재정의 측면에서 복지재정 확충의 요구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당면한 지출수요를 늘이기 위하여 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될 것임
- 둘째,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다수를 형성하는 고령층들의 입김이 커짐에 따라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간 갈등이 커질 것임
- 셋째,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는 고령자들의 일자리 요구가 증대할 것임. 이에 따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이 일어나게 됨. 예를 들면 작업장들을 노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문제들이 나타날 것임
- 넷째, 자본시장에서는 연금기금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

○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어질 것임

- 첫째, 정부재정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복지체제를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됨 현재의 복지지출을 이어가게 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기존의 복지지출마저도 감당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기존의 공공중심에서 민간중심의 복지 혹은 공공과 민간의 조화(private-public mix)로 전환될 것임
- 둘째, 세대간 갈등의 문제로 고령자들이 기득권을 계속 주장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인구구조를 조정하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해야 할 것임
· 즉, 출산 육아 환경의 개선, 여성의 직장 가정 병행 등을 통하여 후세들을 위한 배려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것임
- 셋째, 노동시장에서 고령층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이들이 퇴직기간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정년제도의 폐지, 연령차별의 금지, 작업장 환경의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넷째, 자본시장은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연금기금의 비중이 늘어날 것임
· 따라서 연금기금이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연금상품이 궁극적으로 고령자들의 노후 생계의 기본이 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함

- **이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과 버금가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퇴직연금의 역할이 커질 것임**
 - 첫째,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기존의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정부의 복지비 부담을 줄임
 - 둘째, 퇴직연금은 본인이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기금으로 퇴직기간에 생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세대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감소시킴
 - 셋째, 개인들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더 노동시장에서 오래 머무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이는 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임 이는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결과를 낳음
 - 넷째, 퇴직연금기금은 자본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생산활동에 활용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2. 고령화와 노후대비 및 퇴직연금의 현황

-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도입 직후 미미하다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는 국민들의 노후 자산 가치를 심각히 떨어뜨려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함**
 - 국민들은 스스로 고령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는 노후 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자본시장은 스스로의 신뢰를 위한 장치가 필요함
 - 정부는 근본적인 고령화 대책으로서 연금시스템을 확립하고,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자본시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부문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반면, 근로자의 노후생활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함

- 퇴직금 중간정산제, 잦은 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1 인당 퇴직금재원이 1,680 만원에 불과함

○ **현재 시장상황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과도한 금리 및 수수료 경쟁, 은행권 꺾기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향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후 근퇴법) 개정안이 2010 년 초 통과시 (미정) 기존 퇴직보험계약의 퇴직연금 전환 등으로 업권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은 2005 년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어 '09 년 11 월 현재 약 172 만명이 가입하였으며, '06 년 12 월 대비 약 150 만명이 증가

- 업권간 가입근로자 수 비율은 은행권이 약 60%, 생보업권이 약 20%임

<권역별 가입근로자 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은 행	생 보	증 권	손 보	합 계
'06.12 월	133,640 (62.6)	40,816 (19.1)	24,565 (11.5)	14,347 (6.7)	213,368
'07.6 월	188,356 (57.1)	74,237 (22.5)	47,466 (14.4)	19,501 (5.9)	329,590
'07.12 월	318,525 (59.2)	121,017 (22.5)	71,146 (13.2)	27,675 (5.1)	538,363
'08.6 월	445,791 (58.6)	173,147 (22.8)	94,874 (12.5)	46,432 (6.1)	760,244
'08.12 월	668,054 (59.7)	229,348 (20.5)	162,784 (14.5)	59,366 (5.3)	1,119,552
'09.6 월	775,992 (58.8)	273,651 (20.7)	202,245 (15.3)	68,357 (5.2)	1,320,425
'09.11 월	1,045,478(60.7)	350,835(20.3)	243,624(14.1)	82,726(4.6)	1,722,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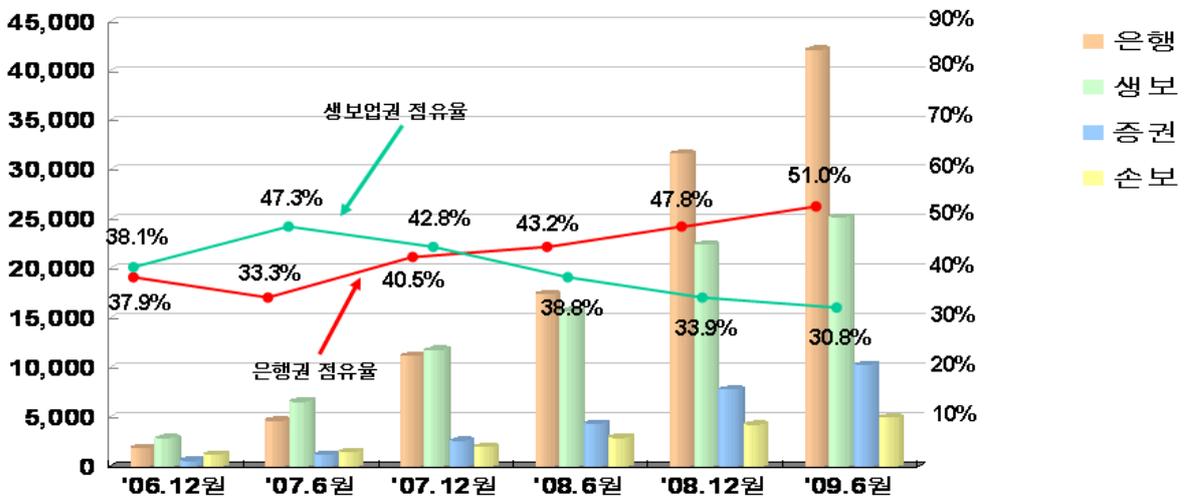
○ **'06 년말까지 약 7,500 억원에 그쳤던 적립금은 '09 년 11 월 현재 약 10 조 3 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급격히 증가될 전망임**

- 업권별 시장점유율은 '07 년말까지 생보업권이 우위를 점했으나 '08 년 중반부터 은행권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이 절반 이상(54.2%)으로 증가함

<권역별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생보	증권	손보	합계
'06.12 월	2,861 (37.9)	2,877 (38.1)	615 (8.1)	1,205 (15.9)	7,558
'07.6 월	4,646 (33.3)	6,601 (47.3)	1,227 (8.8)	1,493 (10.7)	13,967
'07.12 월	11,171 (40.5)	11,788 (42.8)	2,614 (9.5)	1,976 (7.2)	27,550
'08.6 월	17,459 (43.2)	15,700 (38.8)	4,339 (10.7)	2,943 (7.3)	40,441
'08.12 월	31,629 (47.8)	22,440 (33.9)	7,805 (11.8)	4,248 (6.4)	66,121
'09.6 월	42,158 (51.0)	25,195 (30.5)	10,286 (12.5)	4,958 (6.0)	82,597
'09.11 월	56,025(54.2)	29,114(28.2)	12,168(11.8)	6,014(5.8)	103,352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문개정법률안의 평가와 향후 방향

- 정부는 현재 퇴직연금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모태가 되는 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그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첫째, 퇴직연금 제도유연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개선됨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B 형과 DC 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18 조) 또한, DB 형과 DC 형의 장점을 혼합한 제도 즉 Cash Balance Plan (CBP)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
 - . 기존에는 사업장내에서는 DB 형과 DC 형 퇴직연금제도의 복수 도입이 가능했으나 근로자 개인은 복수 선택이 불가능했음. 이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이 다를 경우 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 . DB 형과 DC 형의 동시 가입 허용은 양 제도의 운영 책임부담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이점이 있음

- 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 1 항 단서의 담보 제공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 7 조)
 - .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자금 융통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현행 중도인출 억제 (안 제 22 조)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봄. 안 제 22 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퇴직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 제 4 조 3 항) 앞으로는 적용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하였음 (안 제 4 조 3 항). 퇴직금에 부가해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 이는 사실상 제도 도입을 위하여 노사간 합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한 데서 행해진 개선 방안임

- 다수의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 23 조 1 항).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가입시킬 목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3 조 2 항). 이에 따라 모기업, 연합회 등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퇴직연금규약에 다수의 계열사나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 기존에는 개별기업의 퇴직연금규약이 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결제를 달성할 수 없어서 적립금 운용 등의 비효율성, 협상력의 약화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연합형 제도가 가능함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봄

○ 둘째,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강화함

- DB 형 사외적립의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현행 최소적립금의 60%에 불과한 사외적립비율을 선진국 수준(90%)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 15 조 3 항)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할 경우 장래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고, 150%를 넘을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5 조 4 항)
 - . 이에 따라 DB 형의 재정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며, 초과 적립에 따른 사용자 반환 분에 대하여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 안정을 기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음
-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 (안 제 20 조)
 - . 현재는 제재 수단이 없어 사업장 도산 등 대응이 곤란하였음

○ 셋째, 퇴직연금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현행 퇴직일시금제도의 중간정산 요건을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함으로써 퇴직일시금제도의 중간정산을 억제하고, 노후생계에 활용하도록 유도하였음 (안 제 8 조 2 항)
 - .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퇴직일시금의 중간 정산이 가능했음
 - . 미국 401K 의 경우에 있어서도 “퇴직, 장애, 사망, 플랜 폐지”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함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 경제적 궁핍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함 이 조항으로 인하여 퇴직일시금제도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은 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됨
 - .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재원 소진을 최소화하고, 퇴직연금의 선택을 유도하였음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연합연금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게 되었음 (안 제 23 조 참조)
-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설립 1 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자동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그러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5 조) 즉, 신설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퇴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퇴직연금을 자동 적용하도록 함

- 프랑스, 호주, 스위스, 홍콩 등은 기업연금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음. 근로자들이 입사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연금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퇴직연금을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보수체계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고 (안 제 2 조 10 호), 자영업자 및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임의 (퇴직급여제도에 추가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 25 조 1 항)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되 근로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 25 조 2 항)
 -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추가 납입에 대하여는 미국의 IRA 에서와 같이 세제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미국은 연 2,000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instant tax credit 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음**
- **첫째, 퇴직연금의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함**
 - 연금계리제도를 도입함. 2011 년 국제회계 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의 퇴직부채를 계속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바 이를 위한 연금계리제도를 도입(현행은 청산기준에 의해 산정)함
 - 전문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조사·통계인프라를 구축함
 -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제도설계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하고, 퇴직연금 운영실태 파악 및 효과적 감독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금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함
- **둘째, 관련부처와의 협조사항으로 세제 인센티브 개선 및 예금자보호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제도 손비 인정을 축소·폐지함. 장부상 적립금의 35%('09 년 30%)까지 손비 인정해 주고 있는 법인세 혜택을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의 선택을 유도함
 - 퇴직연금 관련 근로자들의 세제혜택을 확대를 요구함 DC 형의 근로자 추가납입분 소득공제혜택 및 연금소득공제혜택 확대 등 근로자 세제혜택을 확대함
 - 즉,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300 만원을 별도로 300 만원을 인정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제도를 확대 적용함. DB 형 및 DC 형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하여 금융기관 도산에 대비(DC 형은 적용키로 실무협의)함

4.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개선방향

-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있음

- 첫째,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율에 따라 연금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여율을 높여서 기금으로 확정기여형제도의 파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확정기여형의 도입 시에 사실상의 완전 적립을 요구하는 것임. 퇴직금은 50 여 년 간 거의 큰 폭의 변화 없이 운영되어 기업들에게 매우 익숙한 제도임

- . 이에 따라 DC 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사외적립에 부담을 느껴서 DB 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완전 사외적립을 요구하면 기업은 의도하지 않은 자금의 유출이 당장 발생하게 됨
- .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회전체적으로 신용경색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기업의 자금을 사외 적립하라고 하면 기업은 퇴직연금의 도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음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 .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여율을 차등화하거나 퇴직연금 준비금으로서 기금화 함

- 둘째, DB 및 DC 형에 대한 예금자보호의 전면적용은 문제가 있음

- 노동부는 이들 제도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를 적용하고 한도도 개인당 5,000 만원에서 7,500 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 . 예금이 아닌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보장을 해 줄 경우, 가입자들은 무조건 위험이 높은 성장형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실패할 경우 원금 보장의 부담은 금융기관이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예금자보호를 통한 연금제도의 지급보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 퇴직연금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문제들이 근퇴법에서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기관에 대한 잘못된 운영으로 제도 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음
 - 즉, 근퇴법에서와 달리 소위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세법 및 공정거래법 등 타 관련법에서는 퇴직연금을 일반적 상품의 하나로서 관리 감독하거나 이 제도로 인하여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 상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ALM(자산부채관리)이 운영되어야 하고, 감독방향도 초장기 상품이면서 적립액도 어떤 다른 상품 보다 많으므로 감독도 더 강화되어야 함
 - 운영 면에서도 지배구조가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되어야 함
- 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개정안 외에 조원진의원(한나라당)은 동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임. 조원진의원의 개정안의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 퇴직 후에도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 (안 제 12 조제 6 호)하거나 여러 개의 중소기업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 13 조의 2 및 제 19 조제 3 항, 제 32 조제 5 호 및 제 6 호 신설) 등은 노동부의 안과 맥을 같이함
- 노동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원진의원의 주요 안건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것임
 - 퇴직연금을 장기로 운영하도록 하고 원리금 보장 운영방법의 경우 계약기간 3 년 이상 50%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안 제 17 조제 2 항 및 제 17 조제 3 항)
 - 퇴직연금 자산은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근로기간과 퇴직기간 동안 적어도 20-30 년 이상 장기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 미국이나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퇴직연금의 장기적 속성에 맞추어 자산의 70-80%를 5 년이상 장기상품에 투자하고 있음. 반면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1 년 이하 단기 상품의 비중이 전체 적립금의 74%를 차지하는 등 왜곡 운용되고 있음
 - . 예를 들면 장기 속성의 퇴직연금 자산이 증권 ELS 등 고위험 초단기 상품으로 운용됨에 따라 장단기 변동 리스크에 퇴직금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퇴직연금기금의 단기적 운용은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 향후 2015 년 연금시장이 120 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할 때 이는 국내금융시장의 위기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외에 조원진의원안은 퇴직연금 모집인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모집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불건전 행위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처벌규정을 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됨

5.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 퇴직연금제도의 개선 방향은 최근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매우 긍정적이고 시의 적절하다고 봄. 그러나 이에 따라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은 제도의 효과를 상실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함

○ 첫째, 퇴직연금의 불공정 경쟁문제임

- 김원식외(2008)의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 등이 기업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분리시킨 것임에도 사실상 이 두 업무가 같은 기관에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은행의 경우 은행이 퇴직연금신탁계약을 자행예금으로 취급하면서 은행이 퇴직연금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탁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퇴직보험이 예상과 달리 퇴직연금으로 순조로이 전환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개발원의 최근 서베이에 따르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주거예행제도 등으로 퇴직보험은 은행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퇴직연금의 유치시 문제점으로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조건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규대출허용조건이 129%,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이 73%,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는 조건이 48%, 만기도래 및 회사채의 연장조건이 4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퇴직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퇴직 후에 귀속되는 자산으로서 평균수명이 개인보다 낮을 확률이 높은 기업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자기 기업에 대하여도 투자 (펀드에 포함된 투자 포함)하는 것을 일정 수준 이하 (예를 들면 5%이내)로 규제해야 함

○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시 이들 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현재 10인 미만의 소기업들의 가입률 (2%대)이 매우 낮음.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가입률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업들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입을 통한 퇴직연금혜택은 사회안정에 큰 외생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가입유인이 필요함
 - 영세하고 매출액이 적은 기업들에 대하여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바 퇴직연금의 기여기준을 현재의 1년 단위에서 6개월 혹은 분기 단위로 줄이는 것을 고려함 이 경우 비정규 근로자들도 기업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되게 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넷째, 세제 혜택의 확대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유도함

- 세제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현행 연금관련제도는 크게 기여단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것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임
- 연금과세는 경쟁관계에 있는 퇴직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퇴직금의 실효세율은 어떤 다른 소득보다 낮음 따라서 퇴직금 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연금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함
-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수급한 모든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한 후 일반 과세됨
- 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과세혜택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적 기여 및 미래의 불확정적인 퇴직연금 급여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기존의 개인저축의 연금전환 및 현재 사실상 관리 부재의 상태인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될 수 있음

○ 다섯째, 퇴직연금으로부터 적립된 기금의 운용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유연화하면서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근퇴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음
- 퇴직연금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직이 신설되어야 함 이들은 퇴직연금을 위하여 자산운용의 규제, 감시기능 체계, 연금전환 유인 체계, 사업자관련규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함
-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의 규제 감독의 문제는 퇴직연금가입자를 보호하면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위하여 매우 절실함

6. 결어: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퇴직연금의 감독이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퇴직연금의 성격상 가입자와 장기적인 계약이 불가피한 상품인 만큼 감독이 타 금융상품과 구분될 수밖에 없음

-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하며
-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연한 상품 운용을 하도록 해야 하며
- 퇴직연금 감독기관과 기금운용자간에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 퇴직연금 감독은 항상 투명하게 함으로써 가입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퇴직연금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퇴직연금이 기관투자가와 함께 경기완충적인 역할도 수행해야 함

- 예를 들면, 불경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호경기에는 경기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함

○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됨 즉, 앞으로 보건의로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오래 살 것이고, 충분히 좋은 건강을 유지할 것이므로 더 오래 일하고, 그들의 연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함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 사용자, 퇴직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함

- 첫째, 정부는 이들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퇴직연령을 늦추거나 정년제도를 없애야 함
- 둘째,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에 따라 생산능력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력이 떨어져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사용자들은 고령자들이 근로기간들의 직장을 떠난 후 제 2의 인생을 위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함
- 셋째, 퇴직자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인 고령자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일신해야 함
 - 최근 미국의 월마트나 맥도널드의 경우 고령자들은 더 친절하고 적극적이라고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있음. 이는 선진국에서도 고령자들의 자립의지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보임
 - 늘어난 근로기간을 바탕으로 연금기여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퇴직기간 동안 연금급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은 저축액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함.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가장 큰 우려는 저축률의 하락임

○ **저축은 사실상 노후에 노후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쓰이므로 저축의 감소는 노후생활의 불안정과 직결됨**

- 아울러 올바른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함.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자산운용은 한 순간에 생애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투자교육의무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043-840-3464, wonshik@kku.ac.kr)